

## □ 산입범위 확대시 최저임금 실질 인상효과

### 1. 최저임금 적용받는 전체근로자 대상: 7,530원이하 근로자 (2,418천명)

※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인상률만 고려

#### ① 시간당 통상임금≤7,530원 근로자 대상, 최저임금(7,907원) 5% 인상시

	현행		현행 +기타수당		현행 +고정상여금		현행+기타수당 +고정상여금		법 개정 후	
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
1. 7,530원이하	5.0	100.0	5.0	84.0	5.0	94.5	5.0	80.2	5.0	88.0
2. 7,531원~ 8,283원미만	-	-	1.4	4.8	2.2	3.3	1.7	6.5	1.9	2.8
3. 8,283원~ 9,036원미만	-	-	0.0	2.7	0.0	1.0	0.0	3.1	0.0	1.5
4. 9,036원~ 9,789원미만	-	-	0.0	1.1	0.0	0.6	0.0	1.7	0.0	1.0
5. 9,789원~10,542원미만	-	-	0.0	1.0	0.0	0.2	0.0	1.2	0.0	0.6
6. 10,542원~11,295원미만	-	-	0.0	0.5	0.0	0.1	0.0	0.7	0.0	0.6
7. 11,295원~12,048원미만	-	-	0.0	0.6	0.0	0.2	0.0	0.8	0.0	0.5
8. 12,048원~12,801원미만	-	-	0.0	0.4	0.0	0.1	0.0	0.5	0.0	0.4
9. 12,801원~13,554원미만	-	-	0.0	0.4	0.0	0.0	0.0	0.4	0.0	0.3
10. 13,554원~14,307원미만	-	-	0.0	0.3	0.0	0.0	0.0	0.4	0.0	0.4
11. 14,307원~15,060원미만	-	-	0.0	0.4	0.0	0.0	0.0	0.5	0.0	0.3
12. 15,060원이상	-	-	0.0	3.8	0.0	0.0	0.0	4.0	0.0	3.7
실질 인상률	5.0	100.0	4.3	100.0	4.8	100.0	4.1	100.0	4.5	100.0

주 1) 현행=기본급+통상적수당

2) 고정상여금, 상여금: 12로 나누어 산정

3) 시간당임금이 7,530미만은 7,530원으로 가정하고 인상률 산정

4)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
출처) 고용노동부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년 기준,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

#### ② 시간당 통상임금≤7,530원 근로자 대상, 최저임금(8,283원) 10% 인상시

	현행		현행 +기타수당		현행 +고정상여금		현행+기타수당 +고정상여금		법 개정 후	
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
1. 7,530원이하	10.0	100.0	10.0	84.0	10.0	94.5	10.0	80.2	10.0	88.0
2. 7,531원~ 8,283원미만	-	-	5.2	4.8	6.4	3.3	5.6	6.5	6.5	2.8
3. 8,283원~ 9,036원미만	-	-	0.0	2.7	0.0	1.0	0.0	3.1	0.1	1.5
4. 9,036원~ 9,789원미만	-	-	0.0	1.1	0.0	0.6	0.0	1.7	0.0	1.0
5. 9,789원~10,542원미만	-	-	0.0	1.0	0.0	0.2	0.0	1.2	0.0	0.6
6. 10,542원~11,295원미만	-	-	0.0	0.5	0.0	0.1	0.0	0.7	0.0	0.6
7. 11,295원~12,048원미만	-	-	0.0	0.6	0.0	0.2	0.0	0.8	0.0	0.5
8. 12,048원~12,801원미만	-	-	0.0	0.4	0.0	0.1	0.0	0.5	0.0	0.4
9. 12,801원~13,554원미만	-	-	0.0	0.4	0.0	0.0	0.0	0.4	0.0	0.3
10. 13,554원~14,307원미만	-	-	0.0	0.3	0.0	0.0	0.0	0.4	0.0	0.4
11. 14,307원~15,060원미만	-	-	0.0	0.4	0.0	0.0	0.0	0.5	0.0	0.3
12. 15,060원이상	-	-	0.0	3.8	0.0	0.0	0.0	4.0	0.0	3.7
실질 인상률	10.0	100.0	8.6	100.0	9.7	100.0	8.4	100.0	9.0	100.0

③ 시간당 통상임금≤7,530원 근로자 대상, 최저임금(8,660원) 15% 인상시

	현행		현행 +기타수당		현행 +고정상여금		현행+기타수당 +고정상여금		법 개정 후	
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
1. 7,530원이하	15.0	100.0	15.0	84.0	15.0	94.5	15.0	80.2	15.0	88.0
2. 7,531원~ 8,283원미만	-	-	10.0	4.8	11.3	3.3	10.4	6.5	11.7	2.8
3. 8,283원~ 9,036원미만	-	-	1.5	2.7	1.7	1.0	1.5	3.1	2.7	1.5
4. 9,036원~ 9,789원미만	-	-	0.0	1.1	0.0	0.6	0.0	1.7	0.0	1.0
5. 9,789원~10,542원미만	-	-	0.0	1.0	0.0	0.2	0.0	1.2	0.0	0.6
6. 10,542원~11,295원미만	-	-	0.0	0.5	0.0	0.1	0.0	0.7	0.0	0.6
7. 11,295원~12,048원미만	-	-	0.0	0.6	0.0	0.2	0.0	0.8	0.0	0.5
8. 12,048원~12,801원미만	-	-	0.0	0.4	0.0	0.1	0.0	0.5	0.0	0.4
9. 12,801원~13,554원미만	-	-	0.0	0.4	0.0	0.0	0.0	0.4	0.0	0.3
10. 13,554원~14,307원미만	-	-	0.0	0.3	0.0	0.0	0.0	0.4	0.0	0.4
11. 14,307원~15,060원미만	-	-	0.0	0.4	0.0	0.0	0.0	0.5	0.0	0.3
12. 15,060원이상	-	-	0.0	3.8	0.0	0.0	0.0	4.0	0.0	3.7
실질 인상률	15.0	100.0	13.1	100.0	14.6	100.0	12.8	100.0	13.6	100.0

주 1) 현행=기본급+통상적수당

2) 고정상여금, 상여금: 12로 나누어 산정

3) 시간당임금이 7,530미만은 7,530원으로 가정하고 인상률 산정

4)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
출처) 고용노동부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년 기준,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

④ 시간당 통상임금≤7,530원 근로자 대상, 최저임금(9,036원) 20% 인상시

	현행		현행 +기타수당		현행 +고정상여금		현행+기타수당 +고정상여금		법 개정 후	
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
1. 7,530원이하	20.0	100.0	20.0	84.0	20.0	94.5	20.0	80.2	20.0	88.0
2. 7,531원~ 8,283원미만	-	-	14.8	4.8	16.1	3.3	15.2	6.5	17.0	2.8
3. 8,283원~ 9,036원미만	-	-	5.0	2.7	5.6	1.0	5.0	3.1	7.2	1.5
4. 9,036원~ 9,789원미만	-	-	0.0	1.1	0.0	0.6	0.0	1.7	0.4	1.0
5. 9,789원~10,542원미만	-	-	0.0	1.0	0.0	0.2	0.0	1.2	0.0	0.6
6. 10,542원~11,295원미만	-	-	0.0	0.5	0.0	0.1	0.0	0.7	0.0	0.6
7. 11,295원~12,048원미만	-	-	0.0	0.6	0.0	0.2	0.0	0.8	0.0	0.5
8. 12,048원~12,801원미만	-	-	0.0	0.4	0.0	0.1	0.0	0.5	0.0	0.4
9. 12,801원~13,554원미만	-	-	0.0	0.4	0.0	0.0	0.0	0.4	0.0	0.3
10. 13,554원~14,307원미만	-	-	0.0	0.3	0.0	0.0	0.0	0.4	0.0	0.4
11. 14,307원~15,060원미만	-	-	0.0	0.4	0.0	0.0	0.0	0.5	0.0	0.3
12. 15,060원이상	-	-	0.0	3.8	0.0	0.0	0.0	4.0	0.0	3.7
실질 인상률	20.0	100.0	17.6	100.0	19.5	100.0	17.2	100.0	18.2	100.0

주 1) 현행=기본급+통상적수당

2) 고정상여금, 상여금: 12로 나누어 산정

3) 시간당임금이 7,530미만은 7,530원으로 가정하고 인상률 산정

4)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
출처) 고용노동부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년 기준,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

## 2.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대상

- ◆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대이익이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중 1~3분위 대상(197천명)
- 즉 시간당 통상임금 ≤ 7,530원 and 시간당 법개정후 산입임금 > 7,530원이면서
  - 소득분위(정액급여+고정상여 월임금 기준)가 1~3분위에 속하는 근로자 대상
- ※ 통상적인 임금인상 없이 최저임금 위반을 면하기 위한 인상률만 고려

### ① 최저임금(7,907원) 5% 인상시

	현행		현행 +기타수당		현행 +고정상여금		현행+기타수당 +고정상여금		법 개정 후	
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
1. 7,530원이하	5.0	100.0	5.0	3.3	5.0	81.5	-	0.0	-	0.0
2. 7,531원~ 8,283원미만	-	-	0.1	6.5	1.6	6.8	0.0	4.1	1.9	33.8
3. 8,283원~ 9,036원미만	-	-	0.0	32.7	0.0	3.6	0.0	26.8	0.0	18.2
4. 9,036원~ 9,789원미만	-	-	0.0	13.7	0.0	2.3	0.0	14.0	0.0	12.0
5. 9,789원~10,542원미만	-	-	0.0	10.7	0.0	2.2	0.0	13.5	0.0	6.9
6. 10,542원~11,295원미만	-	-	0.0	5.8	0.0	1.4	0.0	8.1	0.0	7.0
7. 11,295원~12,048원미만	-	-	0.0	6.3	0.0	1.4	0.0	8.5	0.0	4.4
8. 12,048원~12,801원미만	-	-	0.0	4.2	0.0	0.6	0.0	5.8	0.0	3.4
9. 12,801원~13,554원미만	-	-	0.0	3.4	0.0	0.2	0.0	4.2	0.0	2.9
10. 13,554원~14,307원미만	-	-	0.0	2.6	0.0	0.1	0.0	3.5	0.0	1.3
11. 14,307원~15,060원미만	-	-	0.0	1.4	0.0	0.0	0.0	1.8	0.0	1.2
12. 15,060원이상	-	-	0.0	9.3	0.0	0.0	0.0	9.7	0.0	8.8
실질 인상률	5.0	100.0	0.2	100.0	4.2	100.0	0.0	100.0	0.6	100.0

- 주 1) 현행=기본급+통상적수당  
 2) 고정상여금, 상여금: 12로 나누어 산정  
 3) 시간당임금이 7,530미만은 7,530원으로 가정하고 인상률 산정  
 4)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
 출처) 고용노동부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년 기준,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

### ② 최저임금(8,283원) 10% 인상시

	현행		현행 +기타수당		현행 +고정상여금		현행+기타수당 +고정상여금		법 개정 후	
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
1. 7,530원이하	10.0	100.0	10.0	3.3	10.0	81.5	-	0.0	-	0.0
2. 7,531원~ 8,283원미만	-	-	1.3	6.5	5.5	6.8	0.8	4.1	6.4	33.8
3. 8,283원~ 9,036원미만	-	-	0.0	32.7	0.0	3.6	0.0	26.8	0.1	18.2
4. 9,036원~ 9,789원미만	-	-	0.0	13.7	0.0	2.3	0.0	14.0	0.0	12.0
5. 9,789원~10,542원미만	-	-	0.0	10.7	0.0	2.2	0.0	13.5	0.0	6.9
6. 10,542원~11,295원미만	-	-	0.0	5.8	0.0	1.4	0.0	8.1	0.0	7.0
7. 11,295원~12,048원미만	-	-	0.0	6.3	0.0	1.4	0.0	8.5	0.0	4.4
8. 12,048원~12,801원미만	-	-	0.0	4.2	0.0	0.6	0.0	5.8	0.0	3.4
9. 12,801원~13,554원미만	-	-	0.0	3.4	0.0	0.2	0.0	4.2	0.0	2.9
10. 13,554원~14,307원미만	-	-	0.0	2.6	0.0	0.1	0.0	3.5	0.0	1.3
11. 14,307원~15,060원미만	-	-	0.0	1.4	0.0	0.0	0.0	1.8	0.0	1.2
12. 15,060원이상	-	-	0.0	9.3	0.0	0.0	0.0	9.7	0.0	8.8
실질 인상률	10.0	100.0	0.4	100.0	8.5	100.0	0.0	100.0	2.2	100.0

③ 최저임금(8,660원) 15% 인상시

	현행		현행 +기타수당		현행 +고정상여금		현행+기타수당 +고정상여금		법 개정 후	
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
1. 7,530원이하	15.0	100.0	10.0	3.3	15.0	81.5	-	0.0	-	0.0
2. 7,531원~ 8,283원미만	-	-	1.3	6.5	10.3	6.8	5.3	4.1	11.7	33.8
3. 8,283원~ 9,036원미만	-	-	0.0	32.7	1.9	3.6	1.5	26.8	2.7	18.2
4. 9,036원~ 9,789원미만	-	-	0.0	13.7	0.0	2.3	0.0	14.0	0.0	12.0
5. 9,789원~10,542원미만	-	-	0.0	10.7	0.0	2.2	0.0	13.5	0.0	6.9
6. 10,542원~11,295원미만	-	-	0.0	5.8	0.0	1.4	0.0	8.1	0.0	7.0
7. 11,295원~12,048원미만	-	-	0.0	6.3	0.0	1.4	0.0	8.5	0.0	4.4
8. 12,048원~12,801원미만	-	-	0.0	4.2	0.0	0.6	0.0	5.8	0.0	3.4
9. 12,801원~13,554원미만	-	-	0.0	3.4	0.0	0.2	0.0	4.2	0.0	2.9
10. 13,554원~14,307원미만	-	-	0.0	2.6	0.0	0.1	0.0	3.5	0.0	1.3
11. 14,307원~15,060원미만	-	-	0.0	1.4	0.0	0.0	0.0	1.8	0.0	1.2
12. 15,060원이상	-	-	0.0	9.3	0.0	0.0	0.0	9.7	0.0	8.8
실질 인상률	15.0	100.0	0.4	100.0	13.0	100.0	0.6	100.0	4.5	100.0

- 주 1) 현행=기본급+통상적수당  
 2) 고정상여금, 상여금: 12로 나누어 산정  
 3) 시간당임금이 7,530미만은 7,530원으로 가정하고 인상률 산정  
 4)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
 출처) 고용노동부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년 기준,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

④ 최저임금(9,036원) 20% 인상시

	현행		현행 +기타수당		현행 +고정상여금		현행+기타수당 +고정상여금		법 개정 후	
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	인상률	비중
1. 7,530원이하	20.0	100.0	20.0	3.3	20.0	81.5	-	0.0	-	0.0
2. 7,531원~ 8,283원미만	-	-	10.5	6.5	15.1	6.8	9.9	4.1	17.0	33.8
3. 8,283원~ 9,036원미만	-	-	5.0	32.7	5.7	3.6	4.9	26.8	7.2	18.2
4. 9,036원~ 9,789원미만	-	-	0.0	13.7	0.0	2.3	0.0	14.0	0.4	12.0
5. 9,789원~10,542원미만	-	-	0.0	10.7	0.0	2.2	0.0	13.5	0.0	6.9
6. 10,542원~11,295원미만	-	-	0.0	5.8	0.0	1.4	0.0	8.1	0.0	7.0
7. 11,295원~12,048원미만	-	-	0.0	6.3	0.0	1.4	0.0	8.5	0.0	4.4
8. 12,048원~12,801원미만	-	-	0.0	4.2	0.0	0.6	0.0	5.8	0.0	3.4
9. 12,801원~13,554원미만	-	-	0.0	3.4	0.0	0.2	0.0	4.2	0.0	2.9
10. 13,554원~14,307원미만	-	-	0.0	2.6	0.0	0.1	0.0	3.5	0.0	1.3
11. 14,307원~15,060원미만	-	-	0.0	1.4	0.0	0.0	0.0	1.8	0.0	1.2
12. 15,060원이상	-	-	0.0	9.3	0.0	0.0	0.0	9.7	0.0	8.8
실질 인상률	20.0	100.0	3.0	100.0	17.5	100.0	1.7	100.0	7.1	100.0

- 주 1) 현행=기본급+통상적수당  
 2) 고정상여금, 상여금: 12로 나누어 산정  
 3) 시간당임금이 7,530미만은 7,530원으로 가정하고 인상률 산정  
 4) 모든 통계자료는 세부단위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상위단위에서 세목의 합계와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음  
 출처) 고용노동부,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2017년 기준, 사업체노동력조사 2017년